

의안번호	2210651
의 퇴 인	신장식의원
회 답 일	2025. 5. 9.
추계번호	25B08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로 함(제2항) 1. 중증후유장애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 생활자금의 대출, 양육비·자립지원금 및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	재량규정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양육비·자립지원금·보조금의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요

□ 현행법¹⁾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 사망자·중증후유장애인(1~4급)의 유자녀·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등) 및 정서적 지원(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 주거환경개선, 방문케어서비스 등)

※ [참고자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요 참조

[표 1] 최근 3년간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대상자	구분	2022		2023		2024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경제적 지원	후유 장애인	재활보조금	4,933	12,481	4,821	12,307	4,749	12,031
		장학금	2	3	2	4	2	4
	유자녀	장학금	784	989	679	978	572	837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352	779	295	694	236	573
		자립지원금	1,024	615	865	531	738	463
	피부양 가족	피부양보조금	852(가구)	2,122	795(가구)	1,977	745(가구)	1,852
	소계		7,095 852(가구)	16,989	6,662 795(가구)	16,491	6,297 745(가구)	15,760

1) 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구분	2022		2023		2024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정서적 지원	심리안정지원		200	202	200	201	205	201
	방문케어서비스		640(가구)	504	675(가구)	482	756(가구)	516
	유자녀 멘토링	멘토링	60	74	60	76	55	69
		체험	28	60	22	55	21	59
	주거환경개선		37(가구)	48	32(가구)	48	41(가구)	48
	상조/출산용품		37(가구)	6	17(가구)	3	13(가구)	2
	소계		288 714(가구)	894	282 724(가구)	865	281 810(가구)	895
	지원사업홍보		—	218	—	189	—	169
관리운영비		—	2,709	—	2,636	—	4,075	
피해예방사업		—	276	—	270	—	262	
합 계			7,383 1,566(가구)	21,086	6,944 1,519(가구)	20,451	6,578 1,555(가구)	21,161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항목·지급금액 등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자)

- (현 행) 자동차사고 사망자·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개정안) 자동차사고 사망자·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²⁾ 이하인 자

○ (지원항목 등)

- (현 행) 중증후유장애인(재활보조금, 장학금), 유자녀(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 피부양가족(보조금),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2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개정안) 중증후유장애인(재활보조금, 장학금), 유자녀(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자립지원금, 양육비), 피부양가족(보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
- * 다만, 자립지원금, 양육비, 보조금은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여야 함

[표 2]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대상자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포함) 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지원항목	중증 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 장학금
	유자녀	- 생활자금 대출 - 장학금 지급 - 자립지원금* - 양육비* * 자립지원금, 양육비는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책정
	피부양 가족	- 보조금* * 보조금은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책정
	기타 지원	- 중증 후유장애인·유자녀·피부양가족 대상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서적·경제적 지원

나. 미첨부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항목·지급금액 등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지원대상자 수와 양육비·자립지원금·보조금 등의 지급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지원대상자 수]

-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됨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 최근 5년간 기초생활 수급자·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 등 현황

(단위: 명)

구분	유형	소득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현행)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u>기준 중위소득의 32%(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 이하인 자</u> 중에서 선정	2,134,186	2,359,672	2,451,458	2,554,627	2,673,485
	조건부 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u>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자</u>	260,297	284,458	306,221	354,750	387,040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미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u>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u> 중에서 선정	400,057	398,214	368,704	328,345	300,252
	합계 ¹⁾		2,794,540	3,042,344	3,126,383	3,237,722	3,360,777
(개정안)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u>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u>		미집계 ²⁾				

주: 1) 현행 지원대상 선정기준 유형(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차상위계층)에 2개 이상 중복하여 해당하는 인원이 존재하므로 유형별 인원수는 중복 인원 수를 제거하여 산정함

*중복제거시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계층

2)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은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통계를 조사 또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 및 중증후유장애인으로서는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장애인의 수, 사망자·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피부양가족의 수, 해당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여야 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지원항목 및 지급금액]

- 개정안은 지원항목에 양육비를 추가하면서 양육비·자립지원금·보조금을 생계급여에 상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³⁾에 따라 지급가구별로 가구원 수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며, 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될 양육비·자립지원금·보조금 등의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표 4] 생계급여 산정방식

$$\text{생계급여액} = \text{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⁴⁾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자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2호)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선정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4)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95,559원씩 증가(8인가구: 3,171,856원)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하고, 피해자 가정의 정서적 안정과 유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
- (수행기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25. 1. 1.부터 수탁기관 변경(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 수행)
- (지원대상) 자동차사고 중증후유장애인(1~4급),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3,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5))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일 것
2.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유자녀 등의 범위

구분	범위
1. 중증 후유장애인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2. 유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가족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비고 (생 략)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① 영 제2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생활형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경제적 지원(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 장학금,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및 정서적 지원(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 주거환경 개선, 방문케어서비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6)

구분	현행(기준금액)
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월 20만원) - 장학금(분기 30만원)
유자녀	-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월 25만원) - 장학금(분기 30만원) - 자립지원금(월 6만원)
피부양가족	- 보조금(월 20만원)
기타 지원	- 중증 후유장애인·유자녀·피부양가족 대상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심리안정지원, 유자녀 멘토링, 주거환경개선, 방문케어서비스 등)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 생활자금의 대출
 -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4]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만원)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25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비고 (생략)

- (지원자 선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제출 서류 확인·심사하여 지원자 결정

